

의안번호	2211263
의 퇴 인	박해철 의원
회 답 일	2025.7.29.
추 계 번호	25B3564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할 경우, 2026년 171만원, 2030년 171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855만원(연평균 171만원)의 과태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과태료(안 제96조제1항 제1호)	-1.71	-1.71	-1.71	-1.71	-1.71	-855	-1.71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3. 본 추계 결과는 최근 5년간 과태료 수입액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재정수입 변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(운영 상황의 공개)	제1항의 열람 대상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 자료를 포함함(제2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27조(자료의 제출) 삭제	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96조(과태료) 삭제	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(제1항) 2.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6조(운영 상황의 공개)	—	• 미대상 － 현행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 － 개정안은 열람 대상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2	안 제27조(자료 의 제출) 삭제	—	• 미대상 － 현행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3	안 제96조(과태 료) 삭제	○	• 공식추계 － 최근 과태료 수입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계기간은 법안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현행법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면서²⁾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

1) 제26조(운영상황의 공개)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³⁾)

-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는 최근 5년간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96조제1항제2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액을 토대로 산출하며, 최근 5년간 과태료 수입액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산출

[표 4]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96조제1항제2호 관련 과태료 수입 현황: 2020~2024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96조제1항제2호	0	1.20	3.60	3.75	0	1.71

주: 수납일 기준
자료: 고용노동부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할 경우, 2026년 171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55만원(연평균 171만원)의 과태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과태료(안 제96조제1항제2호)	-1.71	-1.71	-1.71	-1.71	-1.71	-855	-1.71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3. 본 추계 결과는 최근 5년간 과태료 수입액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재정수입 변화는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제27조(자료의 제출)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3) 제9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2.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최근 5년간 과태료 수입액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재정수입 변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